

#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 2023 - 260 호

##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시직 근로자 모집 공고

2023년산 감귤 가공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1공장 한시직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3. 09. 07.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

1. 모집분야 : 감귤가공공장 가동 보조요원. (단순노무직)

2. 모집개요

구 분	감귤1공장
모집연령	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
근무기간	‘2023. 10. 10 ~ ‘23년산 감귤가공 종료시까지 ※ 주·야간 근무
모집인원	55명
근 무 처	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684-22

※ 감귤가공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및 모집인원을 변경(제한)할 수 있음.

3. 근무조건

□ 근무형태 : 3조 2교대 근무 (주 4일~5일 근무)

(주간근무 : 09:00 ~ 21:00, 야간근무 21:00 ~ 익일 09:00)

□ 근무패턴 : 주간,주간, 야간,야간, 휴무,휴무

※ 야간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, 공장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제 변경 가능(2조2교대제 등)

□ 근로시간 : 주·야간근무 및 추가근무 일정은 근무편성표에 따름

구분	소정근로시간	연장근로	휴게시간
주간근무(주2회)	09:00~20:30	20:30~21:00	12:00~13:00, 18:00~18:30
야간근무(주2회)	21:00~08:30	08:30~09:00	00:00~01:00, 06:00~06:30
추가근무 (주 1회 발생 가능)	-	09:00~18:00 (또는 21:00~09:00)	12:00~13:00 (또는 00:00~01:00, 06:00~07:00)

- ※ 1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으로 1일 1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2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
- ※ 상기 근로시간은 공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임금수준 : 시급 11,075원(道 생활임금 고시금액)

구 분	시 급	월 임금 (평균)	비 고
임 금	11,075원	310만원 상당	3조2교대 기준 (주휴수당 포함)

- ※ 『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에 따른 생활임금 적용
- ※ 월 임금은 시간외·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1개월(만근시) 기준 평균 금액으로 실제 근로내역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

- 기타 제공사항 : 4대 보험 가입 출퇴근 차량 운행 및 식사 제공 (숙소는 제공하지 않음)
- 우대사항 : 지게차 자격증 보유자, 감귤공장 근무 유경험자, 공장인근 지역주민

#### 4.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- 접수기간 : 2023. 09. 08. ~ 10. 05. (근무일 09:30~16:00 내 접수)  
※ 접수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.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
- 접수 및 문의처

접수처	주 소	문 의
감귤1공장	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684-22	전화 : 780-3719

- 제출서류(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 참조)
  - 가. 입사지원서 1부 (우리공사 소정양식 기재)
  - 나.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(우리공사 소정양식 기재)
  - 다. 이력서 1부
- ※ 제출서류 중 미비 제출서류 발생시 접수가 불가하며, 불이익이 없도록 위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비랍니다.

## 5. 결격사유 :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### 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,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,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 ○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
### ○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기피자